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나항에 따르면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화재피해 및 주택의 범위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화재 피해군민에 대해 임시거처 제공, 주택복구비 지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1세대당 5백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 제8조)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 결정 및 통보, 피해지원금의 환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군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반영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본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주택 화재 예방을 통한 군민 보호를 위해 집행기관에 대해 주택 화재보험 가입 독려, 주택용 소화기 보급 등의 적극적인 연계사업 추진 및 주민 홍보 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 함.